

농림부 통상협력과
/ 김수현 수의사

제13차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참석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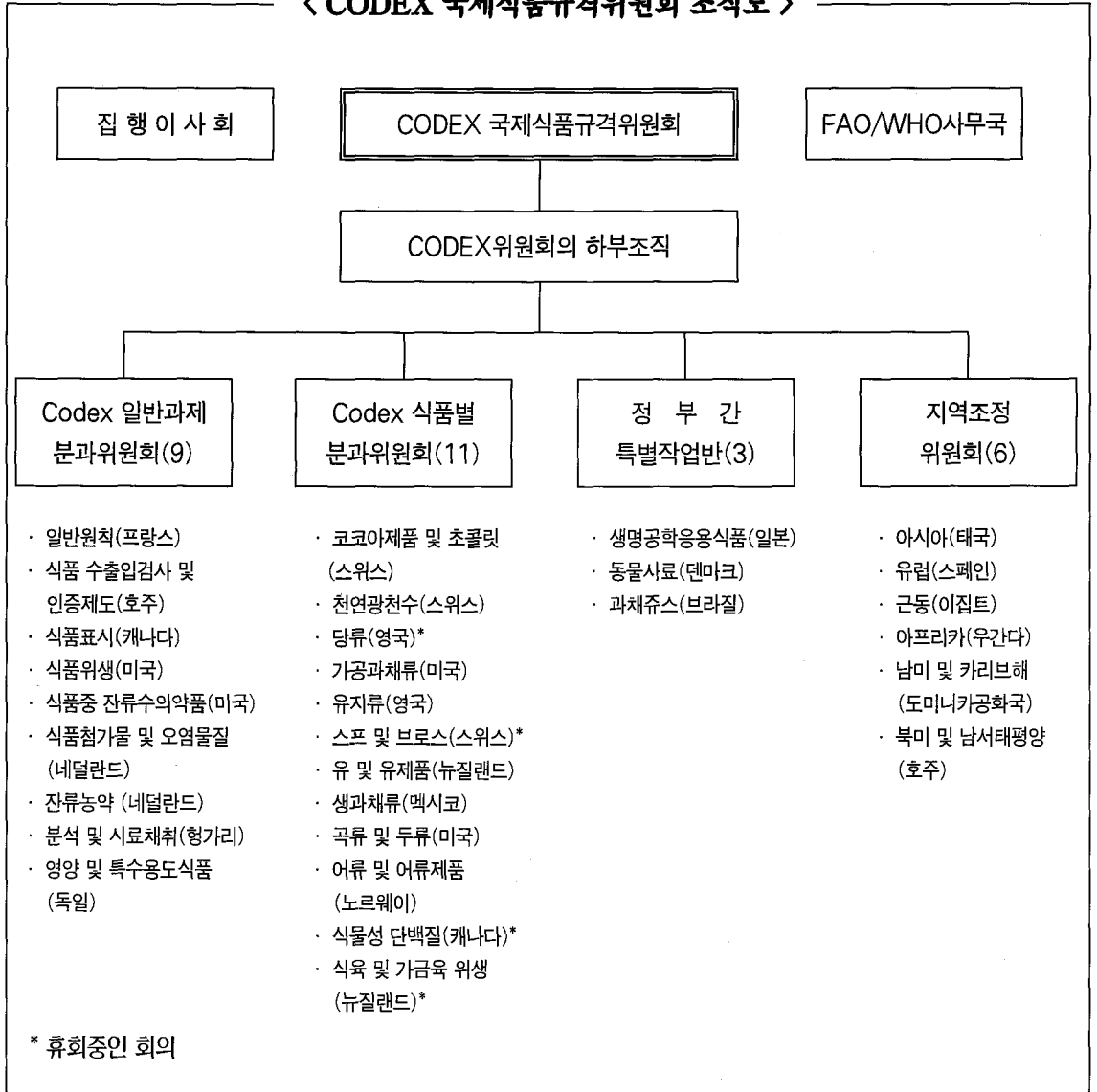
I. 서론

◆ Codex(국제식품규격위원회)란 ?

- 1962년 『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』으로 설립되었으며, '02.10월 기준 회원국은 165개국임
 - 설 립 : 1962년(우리나라 70년, 북한 81년 가입)
 - 예 산 : '98/'99년 약 5.516천불(FAO 75%, WHO 25% 담당)
-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본부내에 위치하고, 그 하부조직에 일반 과제 분과위원회(9개), 식품별 분과위원회(11개), 정부간특별작업단(3개) 및 지역조정위(6개)가 있음
- 의사결정 절차
 - 전원일치제(Concenses)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는 다수결에 의함
 - 의사결정절차는 통상 8단계로 이루어지나 긴급을 요할시 5단계로 기준 제정
- Codex기준의 의미
 -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기준으로써 통상적으로 회원국 등의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나 식품의 국제 교역시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인기준으로 적용됨.
- 그 주요임무는 식품의 소비, 생산, 가공처리, 유통, 관리 및 교역에 있어 국제적인 기본규약을 제공
 - 국제적인 정부간 및 비정부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식품규격화 작업의 조화 촉진, 식품규격안 작업의 개시 및 지도.
 - 식품규격을 확정, Codex 지역규격 또는 Codex 세계규격화 및 개정
- 우리나라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매년 약 10개회의 참석 및 의견제출
 - 관련부처
 - 농림부 : 한국대표(Contact point, 농림부 통상협력과장)로써 부처별 의견 취합 및 사무국과 접촉 창구 역할 수행
 - 복지부, 식약청 : 우리나라 식품규격기준 제정(축산물 제외) 담당
 - 해양수산부 : 수산물관련 품목 담당부서



<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조직도 >



◆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는 ?

- Codex 하부조직인 지역조정위중 하나로, 회원국은 총 21개국임
 - 1977년 인도 뉴델리 1차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2년마다 개최
- 그 담당 업무의 범위는
 - 식품의 규격 및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당 지역의 문제점 및 필요사항의 한계 설정

- 예정된 규제안 및 식품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식품관리 기반구조의 강화 촉진을 위한 조정위원회 내에서의 접촉의 촉진
- 앞으로 국제적인 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조정위원회가 생각하는 품목을 포함하여, 그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품목에 대한 범세계 적용 규격의 설정을 위한 총회에의 권고
- 제한적으로 또는 거의 제한적으로 그 지역내에서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에 대한 지역 규격의 추진
- 총회의 업무중 특히 동 지역에 중요한 과제의 모든 면에 대한 총회에의 관심 촉구
- 그 지역내의 국제적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 식품 규격 작업에 대한 조정의 촉진
- 그 지역을 위한 일반적인 조정 역할 및 총회가 위임한 기타 기능의 수행
- 회원국의 Codex 규격 및 잔류물질의 최대허용기준 수락의 촉진



II. 제13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결과

- 금번 회의는 본 위원회 조정관 수임국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2002.9.16~9.20일 까지 개최되었다.
- 우리나라는 농림부 통상협력과 수의주사 김수현,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보건주사보 김종수,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권우정,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과 연구사 장재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정원 박사, (주)농심 연구개발부 부장 고민호 등이 참석 하였다.
- 본 회의에는 18개 회원국(총 21개 회원국중 북한, 몽고, 미얀마 불참), 3개 참관국 및 국제소비자연맹 등 8개 기구에서 총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.
- 제13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의 주요의제 아래와 같다.

의제번호	의 제
1	의제 채택 (Adoption of the Agenda)
2	24차 총회와 49차 및 50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한 문제
3	FAO/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
4	중기계획(초안) 검토
5	즉석면 규격초안(4단계)
6	"Traceability/Product Tracing" 검토
7	기능성 식품 및 신개발식품에 관한 검토문서
8	식품규격 및 규정에 대한 기능성 설정
9	Codex 규격승인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련 정보
10	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작업에 소비자의 참여
11	지역조정관의 지명
12	기타사업, 향후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
13	보고서 채택

◆ 의제별 주요 논의결과

가. 의제채택

-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는 기 회람된 13개 잠정의제의 회원국이 추가로 제안한 비발효 콩제품에 대한 신규 규격화 필요성 제안(중국), 클로람페니콜의 수산물내 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(인도네시아), 코코넛제품에 대한 규격 초안 검토(필리핀) 등을 6개 의제를 추가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함

나. 24차 총회와 49차 및 제50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논의

- Codex 규격 제정과정에 개도국 참여 장려를 위한 기금운영(Trust Fund)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
- 여타 Codex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한 진행사항 소개와 여타 회원국 및 사무국의 협조를 요청함
 - 태국은 간장에서의 3-MCPD 최대잔류허용치 1mg/kg 설정 지지를 요청, 동 위원회는 동 기준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,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고, 노출량 평가에 관한 추가자료(간장 섭취량 및 3-MCPD수준) 수집 필요성 언급
 -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HACCP적용 지침서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강조
 - 인도는 식품의 국제교역시 적용되어야 할 윤리규범 문제제기, 사무국은 일반원칙 분과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
 - 인도는 위해분석작업원칙의 하나인 공정무역행위 확보에 대해 언급하고, 동 원칙의 세부절차를 개발을 제안, 사무국은 중기계획 반영 예동의
 - 인도네시아는 Sweet Soy Sauce 규격 필요성을 제안, 추후 Codex 가공과채류 분과위원회에 규격안을 제출예정임을 설명
 - 인도네시아는 Palm kernel oil 등 식용 유지의 적재,보관,수송,하역시 유지온도 변경을 제안, 사무국은 관련분과위에 이를 전달하기로 함
 - 필리핀은 가공과채류 분과위에서 논의중인 코코넛 제품 규격초안에 대한 변경을 제안(말레이시아 지지)
 - 중국은 식품첨가물 일반기준(GSFA: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)중 식품분류체계에서 현행과 같이 soybean products를 별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(태국 등이 지지), 사무국은 회원국에 동제품의 정보를 관련분과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

다. FAO/WHO 합동 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

- 사무국은 향후 Codex, FAO 및 WHO의 식품정책, 전략, 관리수준 결정 관련 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회원국의 Codex 기준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서면·현지조사를 실시중임을 설명
 - 서면조사는 각 회원국에 설문서를 송부하여 102 회원국(아국 포함)과 60개 비정부기구로부터 답변 접수
 - 평가팀을 24개 회원국과 EC 등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실시

- 지역조정위원회는 2003.2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특별총회에서 논의예정인 평가보고서(안)을 회원국에 소개,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히고, 관심있는 회원국의 참여가 가능함을 언급

라. Codex 중기 사업계획안(2003-2007년) 검토

- 사무국은 향후 Codex 중기 사업계획안(5개분야 34개 사업)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, 동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2003년 개최예정인 제25차 Codex 총회에서 논의시 반영, 이를 확정키로 함

마. 즉석면류 Codex 규격초안 논의

- 본부 대표단은 일본 및 아세안 국가와 작업반(Ad Hoc Working group)을 구성하여 즉석면류 규격 초안을 검토한 바, 동 결과 아국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동 규격(합의된 규격안 별첨)논의가 5단계(종전 3단계)로 이관되게 되었음.
 - 즉석면류의 범위, 정의, 표시 및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이 모두 반영된 즉석면류 규격안에 합의함
 - 다만, 품질규격중 과산화물가(POV)에 대하여는 일본이 기준 설정을 강력히 주장, 일단 브라켓 처리하고 계속 논의키로 함.

바. 추적성 및 제품추적에 대한 검토

- 사무국은 개도국 입장을 수용, 추적성에 대해 포괄적 적용보다는 사안별로 엄격히 적용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, 각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 제출키로 함

사.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(생물공학기술 응용식품 제외)에 대한 검토문서 토의

- 말레이시아는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에 대한 신규규격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토의 문서를 발표, 여타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함
 - 우리나라는 새로이 제정된 『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』등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아국의 제도를 소개함
- 조정위원회는 FAO 및 WHO가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(아시아 전문가 포함)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

아. 식품규격 및 규정 운영을 위한 능력배양

- FAO 및 WHO는 개도국의 식품규격 및 규정 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임을 소개
 - 읍서버인 소비자단체(CI)는 FAO 및 WHO가 주최하는 Workshop 등에 소비자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
- 사무국은 FAO 및 WHO에 개도국의 동 능력배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

자. 회원국의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

- FAO 및 WHO가 식품관리 및 식품안전관련 활동 및 법령과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제도 등 보고가 있었음
 - 우리나라는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표시제도 등 아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

차.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 작업에 소비자의 참여

- 사무국은 식품안전관련 규정 설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Codex 및 국가차원의 규격설정 등 관련업무 수행시 소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음을 소개, 회원국은 자국의 사례를 발표함
-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『식품위생 심의위원회』등에 소비자 단체가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

카.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선출

- 동 관련, 당초 입후보 의사를 밝혔던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 입후보를 철회하였고, 추가로 입후보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어 일본 및 말레이시아 제의에 따라 2004년 개최 예정인 제14차 아시아 지역 조정 위원회를 개최·주재할 지역조정관으로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추천함.
- 아국 대표단은 본부 추가 훈령에 따라 동 지역 조정관 수입의사를 표명, 차기회의를 주관할 아시아지역 조정관으로 선출됨
- 내년 6.30-7.5 로마에서 개최예정인 제25차 Codex 총회에서 공식 임명될 예정

타. 기타사업, 향후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

- 기타사업
 - 중국은 냉동 비발효 콩 제품에 대한 신규규격 제정 필요성을 제안 하고, 조정위원회는 중국이 규격 (안)을 제출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논의기로 함
 - 인도네시아는 클로람페니콜의 수산물(새우류)내 최대잔류허용치 설정을 제안,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이미 JECFA에서 동 항생물질에 대한 평가결과 무잔류 원칙을 결정한바 있음을 지적하였으나, 만약 새로운 과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Codex 수의약품잔류분과위에 재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을 언급
- 향후 작업
 - 냉동 비발효 콩 제품에 대한 신규규격 검토,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 작업에 소비자의 참여, 식품규격 및 규정 운영을 위한 능력배양 등에 대하여 논의기로 함
-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
 - 사무국과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임명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기로 함

파. 기타사항

-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입 문제과 관련 사무국장과 면담실시
 - 임기는 내년 Codex 총회에서 공식 임명시('03.7월)부터 2년간 수입
 - 조정관은 일반적으로 국장급이 수행하고, 임무는 담당지역 총괄, 차기 회의 개최.주재(소요비용 일부 부담), 집행위원회 및 총회 등 참석
 - 회의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문제는 공식 임명후 외교경로를 통해 추후 논의
 - 사무국장은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입 문제와 관련 아국이 공식 초청할 경우 방한하여 세부 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을 언급

- 된장 및 고추장의 Codex 규격화 필요성 제안과 관련한 협조요청
 - 제21차 Codex 가공과채분과위에서 논의예정인 된장 및 고추장의 신규 규격 필요성 제안과 관련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대표단과 접촉, 협조를 요청한바, 일본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구두 지지 약속을 받음
 - 일본은 된장제품의 범위에 『미소』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는 등 아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

Ⅲ. 금번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사항

- 회원국 만장일치로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임
 - 차기회의 조정관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관심의제 등을 개발, 차기 회의 의제로 논의추진
- 즉석면류(일명 라면) 규격 제정 의사진행과 관련, 즉석면류의 범위, 정의, 표시 및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모두 반영, 5단계로 이관
 - 앞으로 식품첨가물 및 식품표시 Codex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대비
- 된장 및 고추장의 Codex 규격화 필요성 제안과 관련, 각 회원국에 지지 요청
- 우리나라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표시제도 등 아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『식품(축산물 포함)위생 심의 위원회』등에 소비자 단체가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소개
-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에 대한 토의에 적극 참여, 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, 위원회가 FAO 및 WHO에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권고토록 일조함

Ⅳ. 결론

- 식품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Codex기준이 각 국가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. 우리는 국제적 기준 및 지침이 결정되는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
- 앞으로, 차기회의 조정관 수임 예정국인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조정관직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으로는 아국의 식품관리체계 국제화 및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,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표, Codex 지침 및 기준 제·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. 